

사천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1. 10. 10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. 10. 10(의안 제36호)
- 라. 심사일자 : 제59회사천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(2001.10.22)

2. 제안이유

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사천시 농기계수리반을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으로 명칭 변경(안 제1조)
- 나. 부품대금 징수방법 개선
 - 1)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대당 3만원 미만일 때 는 무상으로 제공하고, 그 이상 일때 원가(구입가격)로 징수.
 - 2)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다음날까지 사천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.(안 제7조)
- 다. 농기계순회수리반의 장부비치 목록 규정
 - 1) 농기계 순회수리 부속품 수불부(별지 제1호 서식)
 - 2) 농기계순회수리 소모품 수불부(별지 제2호 서식)
 - 3) 농기계 순회수리 일지(별지 제3호 서식)
 - 4)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징수부(별지 제4호 서식)(안 제10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같이 농기계수리반 설치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 제7조(수리비용)제1항은 부품대금과 소모품가격을 구분지워 “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받되, 소모품의 가격이 소액일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받지아니할 수 있다“는 규정을 ”농기계순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대당 3만원 미만일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개정함으로서 수리비

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오는 불합리 한 점과 매년 시장에게 무상 수리 가격 품의를 받아 수리하는 비능률을 덜고,

- . 동조례 제7조 제2항 “받은부품대금은 사천시 일반회계에 입금한다.”를 “부품대금으로 징수한 다음날까지 사천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.” 로 개정된 조항 역시 수리후 대금징수 시한을 정하지 아니하여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나
- . 제1조(목적)에있어 “사천시농기계수리반”을 “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” 으로개정하고 이하 “농기계수리반을” “농기계순회수리반”으로함은 명칭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3조 제2항의 규정과도 배치되는등의 문제점이 있어 본 용어만은 현행조례대로 하여
- .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수정의결

8. 수정안

수 정 안

원 안	수 정 안
<p>제 1 조 (목 적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</u></p> <p>-----</p> <p>제6조(직원)(생략)</p> <p>② <u>이 동 순 회 수 리 반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위촉할수있다.</p> <p><u>제 7 조 (수 리 비 용) ① 농 기 계 순 회 수 리 에</u></p> <p>---</p> <p>제 8 조 (실 비 보 상) <u>이 동 순 회 수 리 반 에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9조(망실 또는 훼손)<u>농기계순회수리관</u></p> <p><u>계</u>-----</p> <p><u>제10조(장부비치) ---농기계순회수리</u></p> <p><u>반</u>-----</p>	<p>제1조(목적)(현행과같음)</p> <p>제6조(직원)(생략)</p> <p>② <u>이 동 수 리 반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위촉할수있다.</p> <p><u>제7조(수리비용)①농기계수리에 ---</u></p> <p>제8조(실비보상)(현행과같음)</p> <p>제9조(현행과같음)</p> <p><u>제10조(장부비치) ---농기계수리반-</u></p> <p>(각호의 용어중 순회수리를 수리로 수정)</p> <p>※. 조문번호 별도 정리하고 별지 서식중 순회수리라는 용어는 모두 수리로 바꿈.</p>